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 무에 관한 규 정 시행세칙 변경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3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④ (생략)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(S-T 및 S-P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④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u>